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지도자 상시매치 및 미매치 시 처벌 강화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4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지도자 상시배치 및 미배치 시 처벌 강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3. 6.
3. 회 부 일: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지도자 상시배치 및 미배치 시 처벌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제40조제1항제3호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u>배치하여야</u>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 ----- ----- ----- <u>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① (생략)	제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u>

2.·3. (생략) ③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 6. (생략) ② (생략)	를 배치한 자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¹⁾, 반기별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²⁾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자격자를 배치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³⁾.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2) 점검 항목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상시 배치의 현실적 가능성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⁶⁾, 타 처벌규정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개정안의 벌칙 수준을 하향하거나 현행법상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미이행 시 즉시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현행법상 시설기준 위반, 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와 같이, ‘시정명령 → 영업정지명령 등 →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절차를 따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 관련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문체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미등록·미신고 영업이나 폐쇄·영업정지명령 후 영업 지속 등과 같이 시설 운영·준립과 관련된 중대한 수준의 위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무부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휴가 및 일시적 구인 공백 등으로 인한 일시적 미배치에 대한 일률적 형벌은 과한 측면이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그 외에도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단체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골프연습장협회	<수용 곤란> 골프연습장 체육지도자의 상시 배치는 해당 자격보유자의 직원 채용 어려움과 이를 위한 인건비 상승으로 골프연습장 경영을 악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수용 곤란> 골프장은 캐디가 안전관리 가능, 교습 부재로 체육지도자 필요성 낮음 등으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상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예정인바(24.8.28. 개정, 26.1.1. 시행 예정), 개정안에서도 대상에서 제외 필요.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수용 곤란> 스키장 내 체육지도자 역할은 안전이 아니라 강습이고, 안전사고 관리는 스키 구조요원(패트롤)이 담당하는 등 체육지도자 배치가 이용자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지 않는바,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 강화에 해당함.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 의무사항별 제재유형]

처벌수준	의무사항	기타 제재수단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체육시설-미승인 설치/미등록 영업	-
<u>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u>	○ 신고체육시설-미신고 영업 ○ <u>영업정지명령 등 후 영업</u> ○ 안전·위생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체육시설-변경사항 미등록 영업 ○ 안전점검 후 시설물 보수·보강조치 미이행	* <u>영업정지명령 등</u>
	○ 신고소규모체육시설-미신고 영업 ○ 소규모체육시설-영업정지명령 등 후 영업 ○ <u>체육지도자 미배치/무자격자 배치</u> ○ 보험 미가입 ○ 휴·폐업 사실 이용자에게 미통지	-
-	○ 등록체육시설-변경사항 미승인 설치 ○ 안전·위생기준 위반 ○ <u>시설기준 위반</u> ○ <u>보험 미가입</u> ○ <u>기타 준수사항 등 위반</u>	* <u>시정명령</u> → <u>영업정지명령 등</u>

○ 참고로,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⁷⁾

7) (개정안 부칙)

안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67,205개소

계 (단위: 개소)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소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67,205	549	530	14	5	66,656

□ 신고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총 66,656개소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계	66,656	100.0	종합체육시설업	299	0.45
체육도장*	16,126	24.19	인공암벽장업	328	0.49
당구장	15,477	23.22	승마장업	122	0.18
체력단련장	14,976	22.47	썰매장업	115	0.17
골프연습장	8,573	12.86	무도장업	65	0.10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야구)	6,201	9.30	빙상장업	49	0.07
체육교습업**	2,874	4.31	야구장업	38	0.06
수영장업	891	1.34	요트장업	17	0.03
무도학원업	500	0.75	카누장업	5	0.01

* 체육도장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체육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

[참고자료2]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부과내용

- (연도별) 코로나 시기('20~'22년/연 평균33건) 낮은 추세에서 2024년부터 급증
(단위: 건)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19	41	38	63	314	66	541

* 24년이 대폭 확대된 사유는 24.1~2월 중 체력단련장에 대한 체육지도자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종목별) 대다수 체력단련장(70%) 차지, 골프장업(12%), 체육도장업(10%) 순
(단위: 건)

체력단련장업	골프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388	64	56	19	6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빙상장업	총계
3	3	1	1	541

* 골프장: 체시법 규칙 개정(규제개선) 으로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제외 예정('26.1월)

- (부과사유) 대다수 체육지도자 미배치(95%/515건), 미자격 배치(5%/26건)

- (지역별) 체육시설이 많은 지역인 경기(36%), 서울(24%)가 과반수 이상

(단위: 건)

경기	서울	경북	인천	강원	부산	대구	경남
191	127	46	33	21	23	16	15
세종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전남	울산	총계
14	11	9	6	4	4	1	541

* 지역별 시설수(개소): 경기(16,909) > 서울(11,667) > 부산(4,010) > 경남(3,883) > 인천(3,784) > 경북(3,175) > 대구(2,785) > 충남(2,681) > 전북(2,408) > 전남(2,345) > 강원(2,044) > 대전(2,063) > 광주(2,011) > 충북(1,931) > 울산(1,230) > 제주(1,041) > 세종(411)

- (부과금액) 10~25만원(73%/394건), 40~80만원(18%/100건), 100만원 이상(9%/47건)

* 25만원 미만인 경우 자진납부 사유 등으로 경감(지자체 재량)